의안번호	제577호		
의 결	2024년	월	일
연 월 일	(제	회)	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진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5월 29일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진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

발의연월일 : 2024년 5월 29일 발 의 자 : 박진희, 이동우, 김종필,

김호경, 박지헌, 변종오,
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나.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다.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·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충청 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6조의2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 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. 이 경우 「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, 초등학교등의 관계자 및 충청북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시행계획(이하"시행계획""을 "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부, 보도 및 방호울타리가 완비되지 않은 때에는 그 설치 비율에 대한 개소별 실태를

포함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기본계획 등의 제출)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,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,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 완료한 날 또는 실태조사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 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ộ} 제4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 제4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 획) ① (생략) 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3의2.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. 이 경우 「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 4. ~ 9. (현행과 같음) 4. ~ 9. (생략)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, 초등학교등의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 고,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 ④ (생 략)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5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 | 제5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 획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 획) ① -----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 행계획(이하"시행계획"이라 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----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후단

신설>

② (생략)

제6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 저 사) ①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, 도로 부속물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 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②・③ (생 략) <신 설>

<u>우</u>	어린이	통	학로	내	보도	및
방	호울타리	의	설치	및	관리	계
획-	을 포함	하여	야 힌	다.		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
사) ①
<u>이 경우</u>
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
울타리의 설치 여부, 보도 및 방
호울타리가 완비되지 않은 때에
는 그 설치 비율에 대한 개소별
실태를 포함하여야 한다.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기본계획 등의 제출) 도 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 본계획,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,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 완 료한 날 또는 실태조사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관계법령

□ 도로교통법

-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 -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 - 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 -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 - 4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・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・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 - 5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 - ② ~ ⑤ (생략)

□ 도로법

제50조(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 등) 도로의 구조 및 시설, 도로의 안전점검,

보수 및 유지·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,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.

□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

- 제16조(보도)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. 이 경우 보도는 연석(緣石)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설치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 - 1.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
 - 2.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,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
 -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·개설 시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.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 -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,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.